

-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  
**專門委員 檢討報告**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5년 3월 7일
- 회부일자 : 2005년 3월 8일

제안 이유

- 한국가스공사의 충북권 천연가스(LNG)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함.

주요 내용

-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
  -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% 경감(안 제30조제1항)
-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(안 제30조제2항)

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사업관련 취득·등록세 면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,

-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·등록세 전액을, 일반도시가스 및 가스도매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·등록세를 50% 감면해 줌으로써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.

**※ 지방세법**

제7조(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)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9조(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)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,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.

-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, 공익 등을 이유로 취·등록세를 면제해 준다면 한전이나 토지개발공사 등 타공기업에서도 같은 사유로 취·등록세 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아울러 도세 감면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